

AI기술의 부패방지과 인권 침해의 논의*

- 홍콩 사례(복면금지법)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I technology's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김형섭(Kim, Hyung Sup)*** · 황선영(Hwang, Seon Yeong)****

ABSTRACT

On July 2, 2019, China's leading AI company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the foot recognition system. Differentiate people by step recognition technology. Biometric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by AI technology.

Anti-government protests in Hong Kong began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criminal extradition law." Ultimately, it is a protest that expresses Hong Kong's desire to be free from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in China.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ifying as it uses the "Prohibition of Masking Act" and the "AI Program" to arrest protesters and to find out who is radical. The use of this new technology is positive in that it is easy to judge protest participants from the government sid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it violates Hong Kong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is essential to the democratic system.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notion of freedom of speech, publishing, assembly, and associatio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freedom of speech,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e basis of all democratic societies that members of society can freely express their ideas and opinions. It was decided that democratic politics could never be expected unless an open space for free exchange of ideas was secured.

In the future, the introduction and use of new technologies following the advent of AI can violate our basic rights in areas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and Understand the AI technologies used in China and Hong Kong's anti-masking laws. Based on the newly emerged issues, we need to consider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alternatives to balance the basic right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0978).

** 이 논문은 2019년 12월 20일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7회 학술대회 "가짜뉴스에 대한 공법적 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지면을 빌어 학술대회 토론자 강기홍 교수님, 박세훈 박사님, 이권일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제1저자), 법학박사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수(교신저자), 법학박사

Key words: A.I, anticorruptio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embly,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Prohibition of Masking Act, privacy law, human rights

I. 서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 기술 - 제도”의 공진화(coevolution, 共進化)¹⁾는 분초(分秒)를 다투며 빠르게 발전해 나가면서 新기술과 新인류의 탄생을 예측하고 있다. 新기술은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법률과 해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 주며 이러한 新기술의 대표주자 중 하나는 AI(인공지능)이다. 초연결사회를 이루기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융합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누출에 의한 범죄, 소비자권익의 침해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정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홍콩인의 열망이 표출되는 시위라 할 수 있으며, 시위 참여자 검거 및 과격 행위자 색출을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 ‘복면금지법’과 ‘생체인식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이런 新기술의 이용은 정부 측면에서 시위 참여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된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홍콩시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현(表現)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인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이며,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²⁾ 헌법재판소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³⁾ 또한 표현의 자유는 현대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1) 다른 종(그룹)의 유전적 변화에 맞대응하여 일어나는 한 종(그룹)의 유전적 변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는 여러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관계를 통한 진화적 변화를 일컫는다. 미국의 생물학자 Paul R. 에틀리히와 Peter H. 레이븐이 나비와 식물의 밀접한 관계를 연구하던 중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지만, 그 개념은 훨씬 이전 다윈이나 라마르크의 저서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88246&cid=42566&categoryId=42566> 네이버, 과학용어사전, 2019. 12. 14. 방문).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1195면.

3) 헌법재판소 1998. 04. 30, 95헌가16,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정 결정을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⁴⁾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集會)·결사(結社)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⁵⁾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집단적 성격의 표현이다. 그리고 법적 성격은 학설에서 표현행위는 소극적 및 적극적 표현의 양작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일정한 내용표현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며,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의사를 방해받지 않고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표현의 내용은 주로 사상 또는 의견이다. 그러나 영리적 표현도 보장되기 시작하였고 상징적 표현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하나로 중시되고 있다.⁶⁾

전술한 바와 같이 홍콩사태로 유추해보면, 중국의 경우 부패된 AI(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수집·분석해서 국민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AI(인공지능)의 발달이 사회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술이용이 부패하게 되면 개인 정보·사생활 침해·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홍콩사례에서 문제되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세계인권선언⁷⁾에서 살펴보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엔은 주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인권을 국내문제로 인식하고, 예외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고 개입을 정당화해온 것이 사실이다.⁸⁾

따라서 본 논문은 홍콩사례를 분석하여 홍콩시민들의 인권침해 문제와 현재 개발되어진

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명시하였다.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844면.

5) 성낙인, 위의 책, 1251면.

6) 결정례에서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김철수, 위의 책, 844면; 헌법재판소 2002. 04. 25. 선고, 2001 헌가 27,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4권 제1집, 251면 이하; 헌법재판소 2009. 05. 28. 선고, 2006 헌바 109 등,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1권 제1집(하), 545면 이하).

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나뉘어 1966년에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오승진,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과 개인배상”, 법학논총 제44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2면.

8) 오승진, 앞의 논문, 13면 이하에서 “다수의 인권조약에서 개별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국가보고제도와 개인통보제도,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보편적 정기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등으로 인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시적인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인권이 국내문제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수집 기술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부패된 AI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초점을 맞춰 연구 하고자 한다.

II. AI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 기술의 현황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미니 등 요즘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IT서비스 대부분에는 AI(인공지능)⁹⁾ 기능이 탑재되어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게 이미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것이 바로 AI이다.

주지하다시피 AI(인공지능)는 인간처럼 학습 및 판단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예전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요새는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이 가능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AI 속에서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용화가 되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2025(中國製造2025)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터 인공지능 산업 관련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3.5규획(十三五)과 국가 전략성 신흥 산업 발전 규획(十三五“國家戰略性新興產業發展規劃)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하였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용에 적극적이다. 현재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 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중국의 AI(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허수이디(銀河水滴)의 수이디헤안(水滴慧眼)

2019년 7월 2일 중국의 선도적인 인공지능기업 인허수이디(銀河水滴)는 세계 최초로 ‘스텝 인식 인터커넥트 시스템’¹⁰⁾인 “수이디헤안(水滴慧眼)”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는데 성공했다.

수이디헤안(水滴慧眼)은 발걸음 정보 인식 기술에 기초하여, 발걸음 데이터 설정·발걸음 인식·발걸음 검색·넓은 범위 추적 등의 기능을 데이터로 집약하고 카메라로 인식한 발걸음과 실시간 스마트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이디헤안(水滴慧眼)은 발걸음 인식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하나로 통합된 보안 인텔리전스 솔루션이다. 그리고 기존의 장비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9) AI(인공지능) =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처럼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 프로그램.

10) 저자는 앞으로 “발걸음 정보”라고 말하겠음.

유형의 하드웨어를 증설하여 식별함으로써 전면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다. 수이디혜안은 실시간으로 수만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과거 비디오 및 실시간 비디오 즉시 검색 및 위치 지정 지원, 사전 경고, 이벤트 경고 및 이벤트 후 추적, 지도 제어 및 지도 트랙 추적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에 사용됨으로써 안전한 도시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¹¹⁾ 현재 수이디혜안(水滴慧眼)은 후베이성·광둥성·상해 등 지역에서 경찰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범죄 수사 등 치안에 활용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²⁾

전통적인 영상 모니터링은 동영상 저장과 리액션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영상의 화질 문제나 용의자의 위장 등으로 인해 용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동영상 속의 수상쩍은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직원들이 화면을 응시하는 등으로 동영상을 찾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즉, 빠른 속도로 수많은 동영상에서 용의자를 발견하는 것은 현재 경찰 시스템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허수이디는 스텝 발걸음 인식 시스템 “수이디혜안(水滴慧眼)”을 개발하여 지도 추적·지도 보조·영상 검색·실시간 제어·발걸음 스냅샷·발걸음 추출·발걸음 비교·발걸음 채취 등 8대 기능 모듈을 통합시켰다. 이는 공공안전 분야의 기초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안전도시(공안시스템, 역 공항, 박물관, 학교, 관광지, 상가 등), 중요 인프라(원전, 발전소, 석유화학기지 등), 세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¹³⁾

2. 수이디혜안(水滴慧眼)의 8대 기능과 연관 산업분야

가. 수이디혜안(水滴慧眼)의 8대 기능

수이디혜안(水滴慧眼)의 8대 기능¹⁴⁾은 다음과 같다. ① 지도 추적(地圖追蹤, 발걸음 정보에 따라 선택된 영역의 모든 카메라가 캡처한 대상자의 영상을 검색해 궤적 추적을 실행), ② 지도 보조(地圖布控, 발걸음 정보에 따라 선택된 영역의 모든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검색해 목표 인원의 실시간 궤적 추적을 실행), ③ 영상 검색(視頻檢索, 영상 검색은 발걸음 정보에 근거하여 오프라인 영상에서 고속으로 검색·비교), ④ 실시간 제어(實時布控, 발걸음 정보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많은 영상에 대해 발걸음 검색·비교·모니터링 및 경고), ⑤

11) “科報視点”, https://www.xianjichina.com/special/detail_408600.html, 2019. 12. 10. 방문

12) “科報視点”, https://www.xianjichina.com/special/detail_408600.html, 2019. 12. 10. 방문, 銀河水滴步態識別互聯系統(인허수이디 발걸음 정보 인식)

13) <http://www.elecfans.com/d/1057487.html>, 2019. 12. 10. 방문

14) “科報視点”, https://www.xianjichina.com/special/detail_408600.html, 2019. 12. 10. 방문.

발걸음 스냅샷(步態抓拍, 인허수이디 발걸음 인식 스마트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영상에서 발걸음 시퀀스 추출하여 발걸음 분할을 완료하고, 특별한 정보가 있으면 저장을 완료하고, 저장을 수행하고 동시에 광범위한 뷰 제어를 진행), ⑥ 발걸음 추출(步態提取, 저장한 영상을 활성화하면 영상 검색을 할 수 있고, 저장 영상으로부터 발걸음 시퀀스를 추출하고 방대한 과거 비디오에서 완전한 분할 및 특징점을 추출하여 발걸음 라이브러리를 구축), ⑦ 발걸음 비교(步態比對, 비디오 문자열 분석, 즉 발걸음 정보를 통해 여러 사건 동영상에 대해 빠른 교차 비교를 하고 비슷한 대상을 추출), ⑧ 발걸음 채취(步態采集, 주로 표준화된 발걸음 라이브러리 구축에 사용되며, 특정 인원과 특정 환경에서 맞춤형 자동발걸음정보 채취가 가능)

나. AI를 활용한 연관 산업분야

첫 번째는 스마트 보안(安防) 분야이다.¹⁵⁾ AI를 활용한 얼굴 검색기인 수이디신감(水滴神鑒)도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 정확도와 검색속도 등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현재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최대 1분 이내에 검색할 수 있으며, 최대 20대의 카메라를 실시간 제어·지원한다. 이 제품은 이미 중국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러시아·체코·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교통(智慧交通) 분야이다.¹⁶⁾ 스마트 교통은 AI를 핵심으로 하며 레일



- 15) 인허수이디는 업계 선두에 자리 잡은 발걸음 인식 기술과 초대형 발걸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발걸음 인식의 정확도는 94%에 달하며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데이터를 비교·수정하여 사람 모양 감지, 사람 모양 분할, 시퀀스 인식, 추적 분야에서 최첨단 수준으로 일반 2K HD 카메라에서 50m의 인원에 대해 360도 풀 앵글 인식이 가능하다. 현재 회사에서 개발한 사람의 얼굴형 스마트 검색 일체형 ‘수이디신감’은 발걸음 식별을 통해 신속하게 목표 인원을 고정하고 사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 안전의 지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科報视点”, https://www.xianjichina.com/special/detail_408600.html, 2019. 12. 10. 방문
- 16) 인허수이디는 ‘인공지능 + 빅데이터 + 사물 인터넷’에 기반으로 도시 교통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한다. 현재 회사는 이미 소규모 철도 운송 종합 지능형 검사차량인 “수이디지능 검사(水滴智檢)”를 자체 개발했다. “科報视点”, https://www.xianjichina.com/special/detail_408600.html, 2019. 12. 10. 방문

표면 결함 감지·레일 내부 결함 감지·터널 경계 이물질 감지·터널(선로) 환경 이상 감지·접촉망 상태 점검·레일 거리 자동 감지의 6대 기능을 통합하였다. 또한 터널의 지도와 위치를 맞추으로써 실시간 감지·실시간 경보·백그라운드 데이터 통계 지능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측정 속도는 시간당 15킬로미터로 지하철 노선 당 30명 정도의 전문 유지보수 요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설비 한 대의 수명주기에 걸쳐 약 6,000만원의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지하철 운영의 지능화 수준을 높여서 대중의 안전을 지키고 여행 안전을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업(智慧工業) 분야이다.¹⁷⁾ 인허수이디는 독창적인 소형 샘플 육안 감지 기술을 산업 인터넷에 적용하고 있다. 샘플이 필요 없거나 극히 적은 양의 샘플만 있으면 되는 시각적 탐지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다. 육안으로는 검출할 수 없는 작은 결함에 대한 밀리미터 수준의 실시간 감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정확도와 속도는 인간을 능가한다.

Ⅲ. 표현의 자유와 각국의 복면금지법

1. 홍콩복면금지법(禁止蒙面規例)

2019년 3월 31일부터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700만 명의 홍콩시민 중 200만 명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대규모 시위이다. 일국양제가 실시된 이후 줄곧 홍콩시민들은 영국 식민지 시절과 같은 민주화¹⁸⁾에 대한 강한 열망을¹⁹⁾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 정부의 홍콩시위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중국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민주화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에 공개된 홍콩 시위대는 일국양제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²⁰⁾ 이렇

17) 인허수이디 Industry AI 클라우드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산업 비전 애플리케이션의 4대 카테고리 문체인 포지셔닝 안내·크기 측정, 이상 감지 및 인식 분류를 포괄하고 있으며, 산업 데이터의 수집 및 표시, 모델 교육, 배치 적용 등의 알고리즘 고리를 표준화시켰다. Industry AI는 하드웨어 측정 플랫폼, 영상화 장비, 자동화 실행 기구로 통합하여 제조업의 통합 시각 검사 솔루션을 제공 한다. “科報視點”, https://www.xianjichina.com/special/detail_408600.html, 2019. 12. 10. 방문

18) 홍콩시민들은 홍콩행정장관의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정부에 의해 과반수 지지를 얻은 후보자 중에서 선거로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홍콩 시민이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① 송환법 공식 철회 ②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③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④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⑤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20) 신원우, “2019년 홍콩 시위의 특징과 일국양제 위기론에 관한 고찰”, 아시아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 아시아학회, 2020, 5면.

게 많은 홍콩인들이 결집한걸 보면 “자유”라는 포기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가 가지는 의미는 중대하다고 느껴진다. 이후 복면금지법에 의해 홍콩 시위는 더욱 촉발되었고, 현재는 국제여론과 COVID-19로 인해 시위가 잠시 소강국면을 맞이하고는 있다. 그러다 최근 중국인 민대표대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홍콩 시위는 다시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²¹⁾

가. 복면금지규례 발전

2019년 10월 4일 홍콩의 정부 수반이자 행정장관인 캐리람(林鄭月娥 : Carrie Lam Cheng Yuet-ngor)은 특별행정회의를 열어 ‘비상시규칙조례(緊急情況規例條例)’를 인용하여 ‘복면금지규례(腹面禁止規例)’²²⁾를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긴급법안 발동으로 사회질서를 가능한 빨리 회복하고 폭동을 빨리 진압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규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하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첫째, ‘공안조례(公安條例)’가 감독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둘째, 허가받지 않는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셋째, 불법집회·폭동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복면금지규례’는 면제조항 및 합리적인 예외조항(辨明條項)도 제정하였다. 그 이유는 복면을 착용한 후 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일(의사, 간호사, 연구원 등)에 고용되었을 경우와 개인의 위생을 위해 필요한 환자, 종교적 믿음, 의료와 건강의 수요에 복면이 필요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사항을 예외조항에 규정하였고²³⁾, 따라서 면제조항 및 합리적인 예외조항(辨明條項)을 발표하였다.²⁴⁾

21)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일국양체체제에 따라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시 중앙인민정부의 국아 안보 관련 기구가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수행을 위해 홍콩에 기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 ‘복면금지례’는 2019년 10월 5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례는 “어떤 사람도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활동할 때 불법 집결·허가 받지 않은 집결 등을 포함하여 식별을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복면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죄되면 제4급 벌금 및 금고 1년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360kuai.com/pc/9c1d75621e03bbc33?cota=3&kuai_so=1&sign=360_e39369d1&refer_scene=so_3. 2019. 11. 13. 방문

23) 규례는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지역에서 누군가의 복면이 신분의 식별을 막는다고 판단되면 복면을 벗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에 해당하며 최고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0 위안을 선고한다. https://www.360kuai.com/pc/9c1d75621e03bbc33?cota=3&kuai_so=1&sign=360_e39369d1&refer_scene=so_3. 2019. 11. 13. 방문

24) “중국정부는 새 규례를 만들면서 언론자유와 평화 집회,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기본법과 홍콩인권법안 조례 내 인권보장을 충분히 배려했으며, 새 규례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간섭이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인 목적에도 부합한다.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시위와 충돌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조치가 폭력의 만연을 막고 홍콩이 가능한 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정부 업무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政府在制訂新規例時, 已充分顧及基本法及《香港人權法案條例》內的人權保障, 包括言論自由、和

나.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복면금지규례’는 ‘공안조례’(제245조)에 규정된 ‘공중집회’ 및 ‘공중시위’와 불법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집결기간 중 복면을 사용한 신체분열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²⁵⁾ 폭동을 진압하는 것은 현재 홍콩 행정특구의 급선무다. 특히 지난 수 개월 동안의 불법 집회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거의 전부 복면을 통해 신분을 감춘다는 점에서 복면금지규례를 입법하게 되었다. 복면 착용은 경찰의 법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증거를 찾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일부 사람들이 외모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본 규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복면금지규례’는 일정한 저지력을 가짐에 따라 어떤 사람이 거리낌 없이 하거나 일시적인 충동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다. 실시 상황과 위헌결정

2019년 10월 8일 홍콩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어 ‘복면금지규례’ 시행을 발표 한 이후 해당 규례 위반 혐의로 77명을 구속 되었다. 이 중 74명은 불법으로 집결해 복면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3명은 경찰의 압수수색 때 협조하지 않고 복면을 제거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발표하였다.²⁶⁾

복면금지규례가 실시된 지 한 달이 조금 넘는 2019년 11월 18일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홍콩 고등법원 고드프리 램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콩 기본법에 명시한 ‘공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한해 행정장관이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복면금지법은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

平集會和私生活的權利。新措施對市民權利的干預極為有限，而且與保障公共安全和公共秩序的合法目的相稱。經過了四個月持續示威和衝突，我們希望這項措施能夠幫助阻止暴力蔓延，讓香港盡快恢復正常，希望大家能夠理解並支持政府工作。”고 홍콩 시민들에게 발표하였다. 2019. 12. 10. 방문, https://www.360kuai.com/pc/9c1d75621e03bbc33?cota=3&kuai_so=1&sign=360_e39369d1&refer_scene=so_3

25) ‘공안 조례’ 제245조에 의해 규제된 “공중 집회”와 “공중 행진” 및 “불법·비준되지 않은 집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불법 집결 : 3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행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안녕을 해치게 하거나 자극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집결 : 50명보다 많은 집회나 30명 이상의 집회가 있었고, 경무처장은 사전에 관련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처장이 집회나 행진을 금지하거나 반대한 상태였다. 허가받지 않은 집결 : 3명 또는 3명 이상이 집회나 행진, 집결 때 공안조례에 따른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집회는 단순히 사고·강락·문화·학술·교육·종교 또는 자선 목적, 장례 목적, 어떤 공공기관의 목적(예컨대, 정부가 개최하는 공공 포럼) 또는 어떤 조례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하기 위해 열리는 어떤 집회든지 포함하지 않는다.

26) 2019年10月8日，香港警方召開記者會。警方表示，自《禁蒙面法》實施以來共拘捕77人涉嫌違反有關《禁蒙面法》的規定。其中有74人涉嫌身處非法集結使用蒙面物品，另外3人因在警方截查時不合作，涉嫌沒有依從要求除去蒙面物品而被拘捕。（https://www.360kuai.com/pc/9c1d75621e03bbc33?cota=3&kuai_so=1&sign=360_e39369d1&refer_scene=so_3, 2019. 12. 10. 방문.)

다.²⁷⁾

2. 우리나라의 복면금지법

집회의 자유는 이른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의 성격은 그 기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즉, 집회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유사하게 표현의 자유로서의 기능을 공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집단적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갖는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것이다.²⁸⁾

일반적으로 ‘복면집회’라 표현되는 행위를 집시법에서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라 표현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이른바 집회 중 복면금지법 옥외집회 등에서 “신원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처장”(“Aufmachung,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ist,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²⁹⁾ 등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복면, 마스크 착용 외에도 모자를 눌러쓰거나 머플러를 높게 둘러매어 얼굴을 가리는 방법, 얼굴에 페인팅을 하는 분장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³⁰⁾

우리나라도 2006년, 2009년, 2015년³¹⁾에 복면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표현의 자유 및 인권침해 논란 등을 빚으며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복면 착용으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6만여 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³²⁾에서 검은 복면을 착용한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하면서 복면

27) 홍콩 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에서 홍콩 기본법에 대한 해석은 중국 헌법 제67조 제4항, 기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만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로 홍콩 법원은 기본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기본법 해석 문제는 이번 논문의 연구범위가 아니므로 관련 논의는 본 논문에서 생략한다. 北京日報, 《緊急情況規例條例》符合香港基本法, 2019年11月20日, http://bjrb.bjd.com.cn/html/2019-11/20/content_12430254.htm. [2020.05.26 방문].

28) 장영수, “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복면집회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6, 303면.

29) 독일 연방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Versammlungsgesetz: VersammlG) 제17a조.

30) 주현경, “집회 등에서의 복면착용 금지와 형사처벌 -비판적 검토-”, 원광법학 제32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42면.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 대입전형 시험일에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집회·시위 목적의 총포·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며, 집회·시위에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함 (대한민국 국회, 2019. 12. 10. 방문,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2/bodo/bodoView.do?bbs_num=40397&bbs_id=ANCPUBINFO_04&CateGbn=4&Gbntitle=N&no=1101).

32) 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복면 집회 금지 의견이 나왔으나, 표현의 자유와

착용 금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2003년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시위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 복면 착용을 긍정한 바 있다.³³⁾ 그리고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2006년과 2009년, 2015년³⁴⁾에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인권침해·과잉규정 등으로 논란을 빚다가 모두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³⁵⁾

3. 기타 국가의 복면금지법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복면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이 있다. 이 중 미국 15여 개 주는 이미 복면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유럽에서는 10여 개 국가가 복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캐나다는 2013년 법을 통과시켜 소요 및 위법 집회에서 시민들이 복면을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반자는 최고 10년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³⁶⁾

하지만 이는 불법집회나 폭동에서만 금지하는 것일 뿐 원천적으로 복면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조지아와 플로리다 등 15개 주(州)에서 얼굴을 숨기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800년대 소작농 보호정책에 반대하는 농장주들이 인디언으로 변장해 지주 등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복면 금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1950년대부터는 ‘KKK단’ 등 인종차별주의 집단의 폭력 행위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³⁷⁾

인권 침해 우려로 해당 법안은 제출되지 못했다.

- 33)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 헌바 67·83(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제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에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그러나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34) 가장 최근 발의가 이뤄진 2015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무분별한 폭력을 저지르는 집회를 막아야 한다며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야권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이라며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에 이른 바 있다.
- 35) 현재 복면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시위자들이 복면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나 폭력을 은폐하거나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면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의사 표현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 36) 世界上許多國家和地區都已制訂禁止蒙面的法律。美國15多個州已實施禁蒙面法，歐洲有十幾個國家通過了禁止蒙面法律，加拿大規定在社會騷亂中蒙面最多可判處10年監禁。目前國外不少國家已有反蒙面法，包括美國、加拿大、法國、德國等。其中加拿大在2013年通過法案，禁止市民在騷亂及違法集會中戴面具，違例者最高可判處十年監禁。(https://www.360kuai.com/pc/9c1d75621e03bbc33?cota=3&kuai_so=1&sign=360_e39369d1&refer_scene=so_3, 2019. 12. 10. 방문.)

독일은 1985년 법 개정을 통해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폭력시위에서 공무원의 복면 해제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2년 11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폭동시위를 벌이는 가담자를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 중이다.³⁸⁾

프랑스는 2010년 10월 11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La loi n°2010-1192 du 11 octobre 2010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을 제정하였다. 프랑스 복면금지법의 특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회 및 시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공장소에서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다.³⁹⁾

이처럼 세계 각국에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에 한해서 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1789년 인권선언 제4조⁴⁰⁾에서 천명하는 것과 같이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평화로운 집회·시위에서 자신의 표현을 자유를 외치기 위한 복면 착용은 금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IV. 부패된 AI기술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수이디헤안(水滴慧眼)은 발걸음으로 사람을 식별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감시 카메라에 등을 돌리거나 얼굴을 가린 채 걷는 사람의 신원마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이디헤안

37) 2020년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채 숨을 거두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는 항의 시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항의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폭력과 약탈 및 방화로 이어지는 폭동과 총격 사건으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면을 한 시위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복면착용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39762&cid=43667&categoryId=43667> 2019. 12. 10. 방문.

39) 전학선, “프랑스 복면금지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면 이하에서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도 찬반이 많았으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복면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복면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회(l'assemblée nationale) 의장과 상원(le Sénat) 의장이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7일 이에 대하여 조건부 합헌결정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착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찬반 논의의 많이 있고, 이에 대하여 국제사면위원회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40)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자연권의 향유를 보장하는 한계만을 가진다. 이와 같은 한계는 법률을 통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水滴慧眼)은 대도시와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자치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속속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시위가 가열되고 있는 홍콩에도 향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수이디혜안(水滴慧眼)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앞으로는 2019년 홍콩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⁴¹⁾⁴²⁾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가 운영하는 AI기술이 부패되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어디까지 침해 받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인공지능)의 경우 어디까지 발달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처럼 수이디혜안(水滴慧眼)과 수이디신감(水滴神鑒)을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사회로 나가는 것처럼, 부패된 권력 또는 부패된 AI기술이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총체적 감시(Total Surveillance) 또는 전방위적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홍콩사태를 보면 부패된 AI(인공지능)기술이 악용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받는 국민들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침해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악용(惡用)된 AI기술의 부패방지(腐敗防止)를 위한 방안

중국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조항⁴³⁾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 시위의 자유가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홍콩과 중국 전역과 홍콩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검열을 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홍콩의 ‘복면금지규례’는 ‘공안조례’(제245조)에 규정된 ‘공중집회’ 및 ‘공중시위’와 불법 또는 허가받지 않은 집결기간 중 복면을 사용한 신체분열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⁴⁴⁾ 폭동을 진압하는 것은 현재 홍콩 행정특구의 급선무다. 특히 지난 수 개월 동

41) 2019년 6월에 홍콩에는 50개의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당국은 추가로 350개를 더 설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가로등엔 카메라와 블루투스 센서가 탑재되어 가로등이 얼굴식별에 사용될 것이란 의심이 커져왔다. 그리고 시위에 자주 등장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과격분자로 낙인 찍혀 중국으로 송환돼 심판받을 수 있기에 홍콩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1246698>, 2019. 12. 12. 방문

42) 홍콩인들이 누리는 자유가 AI 프로그램인 수이디혜안(水滴慧眼)에 의해 제약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금 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무력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43) 《中華人民共和國憲法》第二章 中華人民共和國公民 第三十五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言論、出版、集會、結社、游行、示威的自由。

44) ‘공안 조례’ 제245조에 의해 규제된 “공중 집회”와 “공중 행진” 및 “불법·비준되지 않은 집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불법 집결 : 3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행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안녕을 해치게 하거나 자극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집결 : 50명보다 많은 집

안의 불법 집회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거의 전부 복면을 통해 신분을 감춘다는 점에서 복면금지규례를 입법하게 되었고, 이러한 복면 착용은 경찰의 법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증거를 찾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시위의 양상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며, 이러한 시위에 꼭 필요한 것이 AI 기술인 수이디혜안(水滴慧眼)과 수이디신감(水滴神鑒)이다. 이처럼 국민의 생활을 돕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개발되어진 AI 기술들이 부패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기술로 악용되는 것이다.

AI기술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⁴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절대 권력자나 권력집단에서 AI기술을 악용하려 하더라도, AI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을 억압하는 명령일 경우에는 스스로 작동을 멈추게 프로그램 되어 지고, AI 기술은 반듯이 본래의 목적인 인간을 위한 헌신을 위해 이용되게 해야 할 것이다.

언급한 AI기술과 ‘복면금지규례’는 일정한 저지력을 가짐에 따라 시위참가자들이 거리낌 없이 행동 하거나 일시적인 충동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중국 정부는 믿고 있다. 따라서 홍콩사태와 AI기술로 유추해보면, 미래의 시위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법률이며, AI기술을 이해하고 법률에 적용시켜야한다. 그래야 소수에 의한 집단통제가 불가능하며, 혹시라도 통제되는 시위에 참가했다라도 시위참여자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2. AI의 빅데이터 수집과 표현의 자유 침해

4차산업혁명, 지식정보사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우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의 눈부신 발달 속도는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류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들을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 발달의 혜택 속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또한 이러한 기술 발달이 우리에게 미치는 또는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늘 우려하면서 살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패된 기술의 발달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또한 법학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회나 30명 이상의 집회가 있었고, 경무처장은 사전에 관련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처장이 집회나 행진을 금지하거나 반대한 상태였다. 허가받지 않은 집결 : 3명 또는 3명 이상이 집회나 행진, 집결 때 공간조례에 따른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집회는 단순히 사교·강락·문화·학술·교육·종교 또는 자선 목적, 장례 목적, 어떤 공공기관의 목적(예컨대, 정부가 개최하는 공공 포럼) 또는 어떤 조례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하기 위해 열리는 어떤 집회든지 포함하지 않는다.

45) ①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협에 처한 인간을 모른척해서도 안 된다. ②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③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에 도입된 수이디혜안(水滴慧眼)과 수이디신감(水滴神鑒)을 보면 우리의 사회도 감시·통제의 사회로 변화할 것이며,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머지않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부패된 AI(인공지능)가 관리·감독 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과 AI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얼굴인식기술의 사용으로 범죄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수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기관이 얼굴인식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찰청은 지문 이외에도 족적, 걸음걸이, 얼굴정보 등 생체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여부 및 그 오·남용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⁴⁶⁾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사’의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죄수사는 명목으로 얼굴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로써는 AI로 인해 불법적으로 취득되는 개인정보나 생체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취약한 상황이다.⁴⁷⁾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로 발달하는 AI에 의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을 보호할 법률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⁴⁸⁾에 생체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46) 이성기,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8, 191면 이하.

47) 이와 관련해서는 이성기, 위의 논문, 191-192면에서 “미국·영국과 같이 얼굴인식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 생체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기관의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생체정보에 대하여는 더욱 취약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그 보호 및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두고 그 보관기관 및 삭제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수권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범죄수사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지문, 홍채,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의 수집과 보관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48)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신설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⁴⁹⁾ 등을 참고해서 현행 법률들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EU 등 주요 국가들은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바이오정보(Biometric Data)’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바이오정보를 보호⁵⁰⁾하기 위한 보호원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정보는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인증 또는 식별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⁵¹⁾고 규정하고 있다.

AI의 빅데이터 수집으로 우리의 개인정보와 생체정보는 자신도 모르게 누출되어 지금도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고 있다. 현재도 우리가 있는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 호텔, 운동장, 골목, 유흥장, 관광지, 마트 등 그 어느 곳도 AI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중국산 CCTV와 전자기기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러한 중국산 CCTV와 전자기기는 앞으로 더욱 많이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패된 AI의 빅데이터 수집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성격을 가지는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선 홍콩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AI를 규제할 법률과 정책들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방법뿐 아니라 복장을 규율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입법”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홍콩과 같은 복면금지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표현(집회)의 자유와 AI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⁵²⁾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헌법 제21조⁵³⁾에

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49)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700&dc=30700&dc=&boardId=1099&boardSeq=45333>, 2019. 12. 10. 방문).

50) (보호 필요성) 바이오정보는 다른 인증수단과 달리 별도로 기억하거나 휴대가 필요 없어 편리성이 높지만, 인증 및 식별 목적의 특성상 손쉽게 신원확인이 될 수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바이오정보는 ① 신원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어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 가능하고, ② 비밀번호 대응이면서도 일반 비밀번호와 달리 유출 시, 변경이 어려움. ③ 또한, 일부 바이오정보의 경우 인증·병력 등 부가적인 정보가 추출될 수 있으며, ④ 얼굴·지문 등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기가 용이한 경우도 존재하여 위·변조에 악용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17. 12, 1면.

51)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며, 독일은 기본법 제8조⁵⁴⁾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는 각국의 국민들이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⁵⁵⁾①, ②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이에 대한 사전허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현대 헌법의 특징이다.⁵⁶⁾ 표현의 자유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적 모델과 표현의 자유에 대응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독일의 존엄성 모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의 연속성의 끝에서 만난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미국의 접근이 미국적 예외론이라는 꼬리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독일의 접근⁵⁷⁾은 독일식의 예외론으로 간주된다.⁵⁸⁾

52) Amendment 1 - Freedom of Religion, Press, Expression. Ratified 12/15/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수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53) 第二十一條 集會、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2 檢閲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Art 8 (1) Alle Deutschen haben das Recht, sich ohne Anmeldung oder Erlaubnis friedlich und ohne Waffen zu versammeln. (2) Fü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kann dieses Recht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beschränkt werden.(제8조 ①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권리는 옥외 집회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55)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역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6) 조재현,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고찰 -인격 발현적 가치와 인격 대응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132면 이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다른 모든 헌법적 가치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 가치의 발현요소로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의 위치를 누리는 반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대응적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는 인격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57) Art 5 (1)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Die Pressefreiheit und die Freiheit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und Film werden gewährleistet.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독일 기본법 제5조 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8) 이러한 미국과 독일 사이의 양극성은 다른 전통을 증명하는데 적절하다. 이러한 평가에 의한다면, ‘자유’에 근거한 미국모델과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독일모델이 표현의 자유의 연속성 상에 양 극단에 존재하게 되고 개별국가들은 이들 양 극단의 연속성 상 어느 영역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가 결합하는 곳에서 발견된다. 결국 개별국가들이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라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체계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인격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인격권 보호요청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요청이 서로 상충할 수 있음을 유념하면서 양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대응적 가치의 성장을 의미한다.⁵⁹⁾

미래의 큰 화두(話頭)는 인간의 존엄성을 AI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지금도 나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되어지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먹는 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지, 내가 어디를 자주 가며, 누구를 만나는지 까지 그 모든 것을 AI(인공지능)는 알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AI에게 구속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속은 인간의 존엄성의 축소와 표현의 자유 침해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련해 수차례 결정을 하였다.⁶⁰⁾ 음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영역의 포함 여부에 관한 결정⁶¹⁾, 익명 또는 가명으로 표현하는 자유⁶²⁾,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유가 보호되는지에 관한 재판⁶³⁾이 그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모두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있다고 판시하였고⁶⁴⁾, 법원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은 최대한 보장하는 편⁶⁵⁾이다.

현재 AI(인공지능)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초에 각하 결정⁶⁶⁾을 했다. 이와 같이 아직은 구체적인 AI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발

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극단적인 ‘자유’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에 이르는 양 가치의 극단 사이의 존재하는 연속성의 어느 한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조재현, 앞의 논문, 132면).

59) 조재현, 앞의 논문, 138면.

60) 헌재 2001. 08. 30, 2000헌가9.;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헌재 2006. 10. 26, 2005헌가14.

61) 헌재 2009. 05. 28, 2007헌바83.;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62) 헌재 2010. 02. 25, 2008헌마324.; 헌재 2015. 7. 30,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63) 헌재 2013. 07. 25, 2012헌바112.

64)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도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한국법학원, 2016, 6면이하에서 “법원도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기조로 변하고 있으나, 그 기능상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리 해석 및 이익 형량을 통해 이를 구현할 뿐,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65) 김우성, 앞의 논문, 6면, 대판 2014. 09. 04, 2012도13718(종교에 대한 비판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판결); 대판 2008. 02. 28, 2005다28365(언론 매체의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판 2008. 03. 13, 2006도3558(음란성에 대한 해석 기준이 강화된 판결) 등.

66) 헌재 2020. 03. 10, 2020헌마289(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에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결정이유는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

생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역시 관련한 판례가 없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AI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 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방식일지, 집단 감시 시스템으로 인한 방식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물론 막연한 우려만으로 新 기술의 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I에 의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들은 항상 인간의 존엄성에 가치를 두는 합리적인 결정을 했으면 한다.

V. 결론

1903년 라이트(Orville and Wilbur Wright)형제가 최초로 실용적인 비행기를 제작·비행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두 형제를 바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117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보면 그들의 도전과 연구는 인류사에 있어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비행기가 불과 50~60년이 안 되어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현대에 들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사랑받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또한 포드의 “자동차”, 잡스의 “아이폰” 등과 같이 인류의 新기술은 우리가 자각(自覺)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전하고 또 발전해 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지각(知覺)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AI(인공지능)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新기술의 영향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사회 환경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전환기에서 기존의 논의나 이론적 해석으로는 AI(인공지능)에 의한 부패(腐敗)와 미래 국민들의 기본권보호, 그리고 새롭게 대두될 여러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홍콩사태와 복면금지법, 그리고 중국의 AI(인공지능) 기술인 수이디혜안(水滴慧眼)과 수이디신감(水滴神鑒)을 보면 미래의 우리의 사회는 감시·통제의 사회로 변화할 것이며,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패된 AI(인공지능)가 관리·감독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부패된 AI기술을 통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개인정보들이 수집·분석되어 빅데이터화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신용등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사회신용등급)의 제도를 만들고 창설하는 것이다.

하다(현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AI(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그 동안 고민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이디혜안(水滴慧眼)과 수이디신감(水滴神鑿), 홍콩의 복면금지법 도입 등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인권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발전과 대안,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성낙인, 『헌법학』, 박영사, 2017.
 정만희, 『헌법학개론』, 피앤씨미디어, 202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7.

2. 연구보고서 및 기타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3. 논문 및 기타

-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한국법학원, 2016.
 김종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정책 고찰”, 법학연구 제77호, 한국법학회, 2020.
 권은정, “공공데이터 영역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적 소고 - 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6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박주희,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약관 통제”, 성균관법학 제32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신원우, “2019년 홍콩 시위의 특징과 일국양제 위기론에 관한 고찰”, 아시아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아시아학회, 2020.
 이관희, “집시법 위헌론 합헌론”, 공법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0.
 이권일,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에 대한 고찰 - 법률유보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이노홍,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State Action이론과 공적 포럼이론에 관한 2019년 Halleck 판결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이민영, “행정조직법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쟁점”, 행정법학 제18권 제1호, 한국행정법학회, 2020.
 이성기,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8.
 이희훈, “최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입법학

- 회, 2017.
- _____,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시위 소음 측정 규정 중심의 입법적 개선방안”, 유럽헌법연구 제29호, 유럽헌법학회, 2019.
- _____,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 공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9.
- 오승진,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과 개인배상”, 법학논총 제44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장영수, “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복면집회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6.
- 전학선, “프랑스 복면금지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조재현, “가짜뉴스와 공직선거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 _____,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고찰 -인결 발현적 가치와 인격 대응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 주현경, “집회 등에서의 복면착용 금지와 형사처벌 -비판적 검토-”, 원광법학 제32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최병각, “복면시위의 금지·치벌과 그 한계”, 경찰법연구 제6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08.
-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한국언론법학회, 2016.
- 홍강훈,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금지의 법적 의미”, 공법연구 제48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20.

주요 홈페이지

<http://www.scfzbs.com>
<https://www.360kuai.com>
<https://www.xianjichina.com>

투고일자 : 2020. 06. 10

수정일자 : 2020. 06. 15

게재일자 : 2020. 06. 30

<국문초록>

AI기술의 부패방지와 인권 침해의 논의

- 홍콩 사례(복면금지법)를 중심으로 -

김형섭 · 황선영

2019년 7월 2일 중국의 선도적인 인공지능기업 인허수이디(銀河水滴)는 세계 최초로 ‘스텝 인식 인터네트 시스템’인 “수이디혜안(水滴慧眼)”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는데 성공했다. 수이디혜안(水滴慧眼)은 발걸음 정보 인식 기술에 기초하여, 발걸음 데이터 설정·발걸음 인식·발걸음 검색·넓은 범위 추적 등의 기능을 데이터로 집약하고 카메라로 인식한 발걸음과 실시간 스마트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정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홍콩인의 열망이 표출되는 시위라 할 수 있으며, 시위 참여자 검거 및 과격 행위자 색출을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 ‘복면금지법’과 ‘생체인식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이런 新기술의 이용은 정부 측면에서 시위 참여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된 AI(인공지능)기술로 홍콩시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현(表現)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인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이며,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앞으로 AI(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그 동안 고민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이디혜안(水滴慧眼)과 수이디신감(水滴神鑒), 홍콩의 복면금지법 도입 등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인권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발전과 대안, 그리고 AI기술의 부패방지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부패방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복면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